

『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3월 26일

나. 발 의 자 : 박세진, 강승수, 권기만, 김근아, 김복자
김태근, 안장환, 양진오, 정하영, 허 복
(10명)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3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4월 3일

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박세진 의원

나. 제안이유

교육부의 201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우리
시의 저학력, 비문해 성인의 문해력 증진을 통해 교육의 평등권
구현 및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마
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의거 성인 문
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
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
-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성인”과 “문해교육” 및 “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- 지원대상은 비문해, 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(안 제3조).
-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-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계획 수립 등 시장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-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·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(안 제7조).
- 성인 문해교육기관·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함(안 제8조).
-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교사·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이들의 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
라. 참고사항

-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, 제4조, 제8조, 제10조
-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제3호, 제5조, 제9조, 제39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엽

○ 본 조례안은

「교육기본법」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의거하여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성인 문해교육의 목적과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 범위를 정의하였고
-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 및 기본인권존중 등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시장의 구체적 임무 등을 명기하였으며
-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관련해 유관기관과의 협력,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필요한 경비지원, 공공시설 이용과 성인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

-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지원으로 성인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문해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는 약 3만2천명이며 65세 이상 인구(24,233명)의 77%인 18,737명, 20세 ~ 64세 이하 인구(263,368명)의 5%인 13,085명이 문해교육 대상자로, 조례가 제정될 경우 비문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할 것으로 사료됨.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